

'98. 8.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김 제 시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98-61
----------	-------

제출년월일 : 98. 8.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용어와 법조항을 일치시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폐기물의 분류를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로 구분(안 제2조).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를 함(안 제6조 및 제 7조).
-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제작, 공급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재활용가능 폐기물중 플라스틱류를 세분하여 재활용 유도(안 별표 1).

3.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김제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4. “재활용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에서 적용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 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및 사료화등 재활용되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탈수 또는 건조시켜 배출하여야 한다.

⑤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깨진유리, 이사 또는 짐수리·정원 손질후 폐기물, 스티로폴등)은 PP포대에 담은후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준한다.

⑥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당해배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을 배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

1. 배출자가 흩어져 있고,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일정하지 않아 청소 차량에 의한 직접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2. 학교운동회·친목대회 등의 각종 집회를 통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다량배출 생활폐기물
3. 배출자가 자체구입한 이동식쓰레기 수거함에 수집된 생활폐기물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 달력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원인불명의 무단 불법 투기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스티커를 부착후 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전까지 시장(환경청소과 및 읍·면·동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③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은 옅은 흰색,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 한다.

②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별표 5와 같이 김제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제작의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 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쓰레기 봉투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공급하고 배출자는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 판매자에게 소비자 가격의 9%에 해당하는 판매 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원 단위에서 버리고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면·동장은 구비서류등을 검토 후 판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장에게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도로변·가로·골목길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읍·면·동장 및 미화원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이경우 공공용봉투는 수수료를 감

면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는 쓰레기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별표 6의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여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쓰레기봉투의 공급가격 및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식폐기물 수거함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3. 제1호, 제2호 외의 폐기물처리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제1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일반봉투의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봉투판매업자가 판매에 필요한 신청량의 봉투 지급전에 징수한다.

②대형폐기물 및 이동식폐기물수거함에 대한 처리 수수료는 배출현장에서 납부고지 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납부 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기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일반용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공급한 일반용 봉투를 기준으로 사용분만 징수하고 여유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가 있다.

⑤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읍·면·동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40ℓ를 기준으로 하며 3개월 이하 사용분을 각 세대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등)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물량 등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등의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유고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자에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등으로 대행행위를 할 수 없을때

제17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공용투입대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입장료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3. 기타 산책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로 하여금 대형쓰레기통, 안내관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구역외의 수거) 시장은 수거대상 지역 이외에서 청소 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부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이 조에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부과기준은 간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21조(권한위임)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행정협의) 시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접한 시, 군에 수집·운반 처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포상금지급)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김제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1995. 2. 4 조례 제6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증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증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6조제3항관련)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이 류	가. 신문지	○ 들기에 젖지 않게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두며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 나. 책자, 노트, 포장지 종 소핑백, 종이, 달력	○ 비닐코팅포지, 공책의 스프링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함)
	다.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라.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비닐코팅된 부분 제거)
2. 캔 류	가. 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고 걸 또는 속에플라스틱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하고 봉투(비닐 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나.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가. 음료수 및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후 물로 헹구어 배출하고 달배공초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등은 슈퍼에 팔수 있음
	나. 농약병	○ 물로 헹군후 음료수 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 철 류	가.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비철금속(전선, 양은, 스텐류, 알루미늄샷시 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증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 라 스 틱 류	가. PET병	○ 뚜껑을 제거 후, 물로 헹구어 배출
	나. 합성수지용기류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폐유용기류는 제외) ※플라스틱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다.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이물질 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투면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하고 과일, 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헹구어 배출
	라. 페스티트폴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50호)에 의하여 제조자들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들에게 직접 배출 단,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페스티트폴과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타재질(PE,PP)로 코팅된 페스티트폴은 제외

경고 안내문 (제7조제2항관련)

○ 여기에 버려진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한 쓰레기이므로 시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투기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청 ○○○○○○ : ☎ 540-○○○○○)

※ 불법투기 신고자는 위반 행위자 처벌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불법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납부 및 형사고발 당하고 불법투기한 쓰레기까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주) 노란색바탕에 검정색 글씨

[별표 3]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8조관련)

품명	규격	수수료(원)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12인치이상	3,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콘	256㎡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2,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공기청정기	모든규격	2,000
장능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쇼파	대형 6인용	8,000
	소형 4인용	5,000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그랜드	15,000
○ 깨진유리, 스티로폼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0kg 이하	1,000
	40kg 이하	2,000
	80kg 이하	3,000
○ 이사·집수리·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	80kg 초과 (쌀마대용량기준)	4,000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9조제2항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높이 × 나비, cm)	용도	비고
5	46.5 × 26	일반용	
10	56.5 × 33	일반용	높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0~4%
20	65.9 × 42	일반용	
50	91.5 × 56	일반 및 공공용	

(주)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 봉투상단에는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여분의 길이(cm) = 가로길이(cm) / π + 5(cm)

[별표 5]

쓰레기 봉투의 표시(제10조제2항관련)

<p>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p>	<p>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제시문장</p> <p style="text-align: center;">쓰레기봉투(20 l)</p> <p style="text-align: center;">- 일 반 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쓰레기와 혼합하지 말고 따로 분리 하였고 다가 별도 지정한 일정 및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용기나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김 제 시 장</p> <p>연락처 : 김제시청 ○○○○○○ (540 - ○○○○)</p> <p>물기가 있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작업체 고유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김제시문장</p> <p style="text-align: center;">쓰레기봉투(50 l)</p> <p style="text-align: center;">- 공 공 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쓰레기와 혼합 하지 말고 따로 분리 하였다가 별도 지정한 일정 및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김 제 시 장</p> <p>연락처 : 김제시청 ○○○○○○ (540 - ○○○○)</p> <p>물기가 있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작업체 고유번호</p>

(주) 1.일반용 봉투중 5 l , 10 l , 50 l 용량 : 생략

2. 뒷면은 지역 주민에게 요망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11조제4항관련)



-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절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떨어져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한 경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녹색(DIC : 92)으로 2드 표현 하거나, 청색(DIC : 579)·녹색(DIC : 634)·검정색·흰색·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의 판매가격(제11조제5항관련)

구분	용량(ℓ)	판매소에 공급가격(원)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원)	
		계	처리비	계	처리비
일반용	5	45		50	
	10	91		100	
	20	172		190	
	50	445		490	

- (주) 1. 쓰레기 봉투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제작비-판매이윤으로 산정한다.
 2. 봉투공급 및 판매가격은 원 단위에서 버리고 계산한다.

[별표 8]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의 저리 수수료(제12조제1항제2호관련)

적용대상	기준	수수료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1톤당	28,000원	15,000원	13,000원

[별지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 호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년도	년	

지역구분 (아파트)(일반주택가)(상가밀집지역)(기타:)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영업장위치도

第9條 및 第10條 削除 (95·3·4)

第11條 (廢棄物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에 관한 危害성의 判斷 및 廢棄物의 처리방법의 決定에 關한 基礎資料가 되는 廢棄物의 性状 및 汚染物質의 溶出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第5454>

第2章 廢棄物의 排出 및 처리

第12條 (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8·4)

第13條 (生活廢棄物의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改正 95·8·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数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数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数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5·8·4>

第14條 削除 <95·8·4>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の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状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16條 (生活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環境部令이 정하는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소관부처 : 환경부

전문개정	1991	· 9	· 26	대통령령	제13480호	
개정	1992	· 12	· 9	대통령령	제13771호	(수거면시행령)
	1992	· 12	· 31	대통령령	제13823호	(행정안전부의위임된사무의관한규정)
	1993	· 6	· 24	대통령령	제13914호	
	1994	· 5	· 4	대통령령	제14255호	(환경정책위원회소속기관조직)
	1994	· 12	· 23	대통령령	제14438호	(국립환경연구원소속기관조직)
	1994	· 12	· 23	대통령령	제14442호	(국립환경연구원소속기관조직)
	1994	· 12	· 23	대통령령	제14447호	(산업환경연구소소속기관조직)
	1994	· 12	· 23	대통령령	제14450호	(환경정책위원회소속기관조직)
	1994	· 12	· 31	대통령령	제14508호	(행정안전부의위임된사무의관한규정)
	1996	· 1	· 19	대통령령	제14897호	
	1997	· 12	· 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안전위원회소속기관조직)
	1998	· 2	· 28	대통령령	제15734호	(환경부와소속기관조직)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 2 조제 3 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 2 조제 3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96·1·19)

제 3 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 2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96·1·19)

제 4 조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 2 조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96·1·19)

제 5 조 (폐기물투기금지지역) 법 제 7 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제5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의하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 계획의 변경요구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6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①영 제6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의에 따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지도 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③영 제6조제3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등 수분함량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외 따로 재생처리하는 경우 또는 재생처리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제품의 원료·재료 또는 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다져, 분쇄, 절단, 용융, 사트화, 폐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 다목 내지 마목 및 자목의 규정와 의한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제7조 (생활폐기물관리계획의시행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

(참 36)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을 제의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구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기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개선·대체등에 필요한 조치내용 및 대상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개선조치등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 7. 1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가. 폐유, 폐유기용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 폐내화물, 재벌구이전에 시유된 드자기편류(이하 "드자기편류"라 한다),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또는 폐농약중 그 배출량이 각각 월 50킬로그램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월 100킬로그램이상인 폐기물
 - 나. 폐산·폐알칼리·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연중 그 배출량이 각각 월 100킬로그램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월 200킬로그램이상인 폐기물
 - 다. 배출량이 월 500킬로그램이상인 으니

제3장 청 소

●김제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1995. 2. 4 조례 제6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쓰레기·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쓰레기·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쓰레기”라 함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고철류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재질·재료·용기를 말한다.

제3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가정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대)

제2장 일반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당해 배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을 배치하여 일반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

1. 배출자가 흩어져 있고,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이 일정하지 않아 청소차량에 의한 직접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일반폐기물
2. 학교운동회·친목대회 등의 각종 집회를 통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다량배출 폐기물
3. 배출자가 자체구입한 이동식쓰레기수거함에 수집된 일반폐기물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사업장쓰레기·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쓰레기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⑥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출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2”와 같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드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드폴리에틸렌으로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김제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양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의 대행 및 수집·운반업 등)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수집·운반 물량 등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

㉓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기 할 때에는 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투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외계 지담할 수 있다.

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기 할 때에는 수집·운반구면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하기 7일전까지 시장에게 구두·서면·전화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체수집·운반·처리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르 지정·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자는 배출되는 쓰레기를 시장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외계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관매스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우천시(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우천시 또는 자연발생적인 우천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제3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15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의 처리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 4. 제1호·제2호 및 제3호 외의 폐기물처리외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제4호의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7”과 같다.

제1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일반용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당해 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대형폐기물 및 이동식쓰레기수거함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현장에서 납부고지한다.

③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외예에 의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일 40리터를 기준으로 세대별 상주인구에 따라 3개월이하 사용분씩 각 세대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18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위탁) 시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할구민회에서 복합되는 일반폐기물을 인접한 시·군에 수집·운반·처리를 요청할 때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

부 칙

- ①(시행일) 이 제표는 영년월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의 부과·징수와의 관한 경과조치) 이 제표 시행일시 영년의 제표구정 의 의함은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였으나 할 수수료 영의 관함조가 영년의 제표의 부과·징수함영무 한다.
- ③(시행기행부의 대한 경과조치) 이 제표 시행일의 영년의 제표의 의함조 각 가정의 의무점으로 영년월 가정양기행영부나 그 상영을 대한 표까지 유년함 계 상영할 수 있다.

(별표1)

생활용가전폐기물의 배출 및 배출요령(제6조제6항 관련)

종 류	종 류	배 출 요 령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노트·달력·포장지·종이소독백 - 종이컵·컵 - 상자류(과자·포장상자·기타·출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기에 쪼이지 않게 함 - 단단하게 부서 차분차분 쏟아서 배출 - 비닐포팅된 광고지·비닐류·기타 노폐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포팅포지·용책의 스프링은 꼭지함 - 비닐포장지류는 책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씻고 누 암착하고 병뚜껑 등거나 합쳐 배출 - 비닐포팅부분 제거 - 상자의 배어 있는 페이퍼·필름을 제거후 암착 하거나 용반이 용이 하도록 부수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알루미늄캔(음·신용류) - 기타캔(부탄가스·살충제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씻고 누 암착하고 암착 - 길 또는 수로 배출스린 부정이 있는 것은 배출스린 제거 - 병뚜(비닐봉투도 가능)의 덮어서 배출 - 누입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 기타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고 누 암착 - 단단해졌을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과주·소주병은 수거에 갈 수 있음

(단)

종 류	분 류	배 출 으 령
4.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용기류·철사·못·철관 등 식별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전선·알루미늄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양부의 원질과 균으로 묶어서 배출 - 외와 같음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크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경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계유 용기류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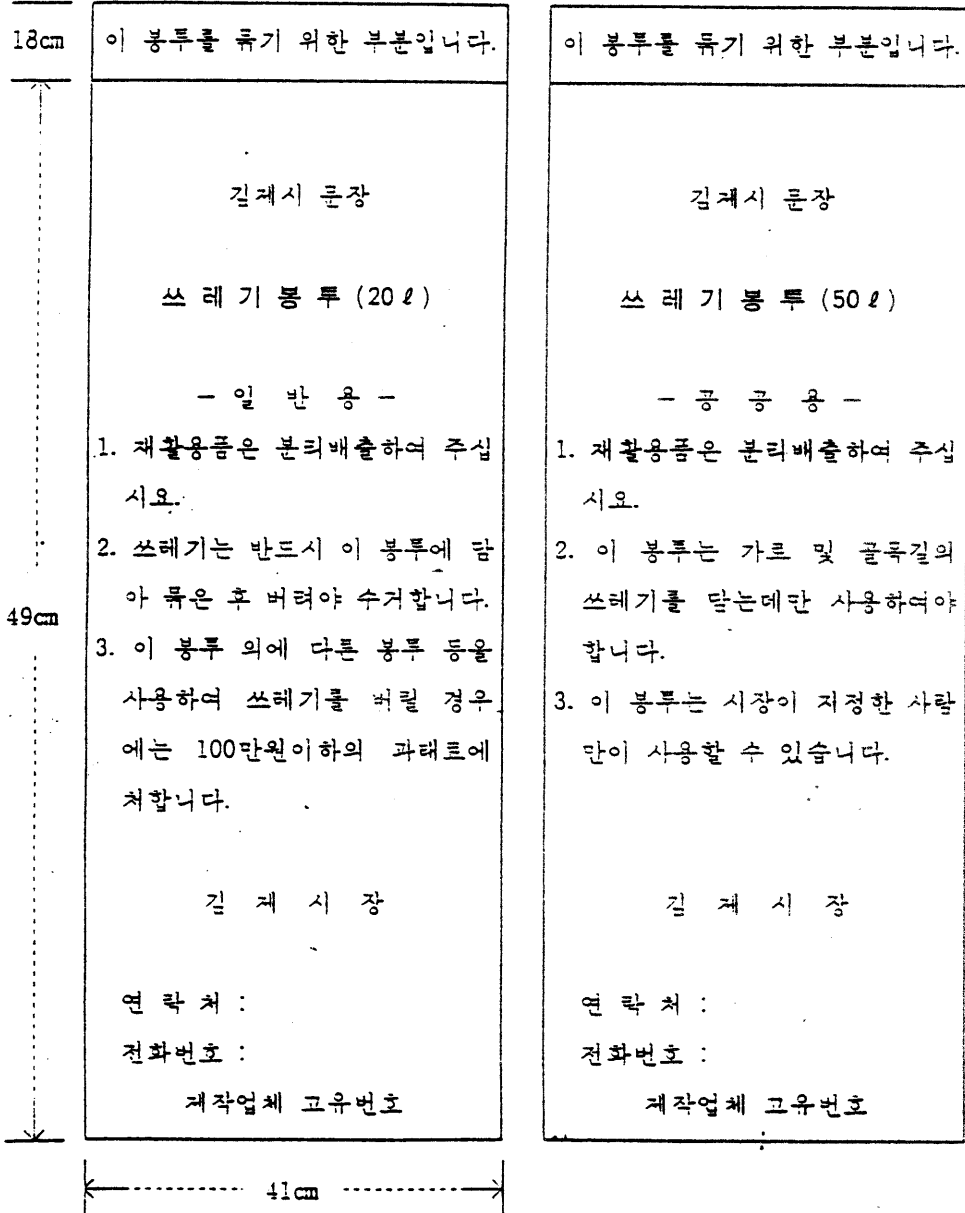
(별표2)

쓰레기봉투의 규격(제8장제2항 관련)

구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가로×세로, cm)
일반양	5	26 × 31
일반양	10	33 × 40
일반양	20	41 × 49
중량양	50	56 ×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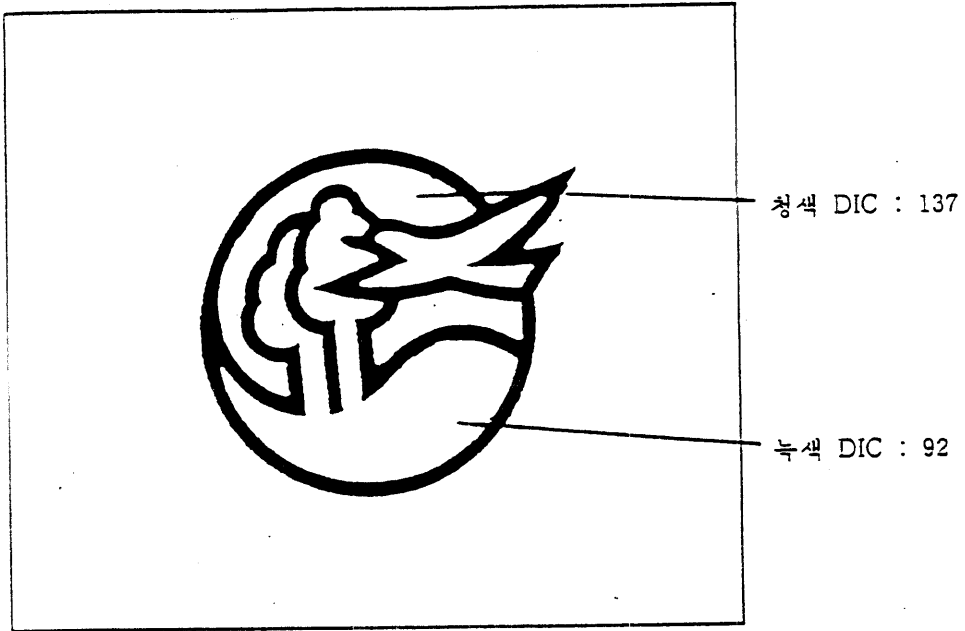
[별표3]

쓰레기봉투의 사양



[별표 4]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판(제10조제2항 관련)



-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건물고도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
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녹색(DIC : 643)·검정색·흰색·금색 또
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5)

다양폐기물 처리비용(표15표제1항제2호 관련)

구	명	구	격	수	수	료 (원)	
인	장	크	500 ㄹ 이상			8,000	
			300 ㄹ 이상			6,000	
			300 ㄹ 미만			4,000	
별	액	피	면	42인치이상		5,000	
				12인치이상			3,000
세	락	기	모든	규	격	4,000	
예	외	관	264㎡형이상			8,000	
			66㎡형이상			5,000	
			66㎡형미만			3,000	
가	스	으	본	렌	지	높이 1㎡이상	4,000
						높이 1㎡미만	2,000
탈	수	기	모든	규	격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이상	2,000	
장	양	장	1	쪽	120ㄹ	15,000	
					90ㄹ	10,000	
소	과	용	기	상	대형 6인용	8,000	
					소형 4인용	5,000	
책	상	상	상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	탁	기	용	기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피	아	노	노	노	어프라이트	10,000	
					그 랜싱트	15,0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양부에 당기 어의한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종류의 수수료를 준용

[별표 6]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의 처리수수료(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조항대상	기 준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6조제4항외 규정된 일반폐기물	1부	7,360	5,120	2,240

[별표 7]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

구 분	양 량 (2)	판 매 금 액 (원)
일 반 용	5	50
일 반 용	10	100
일 반 용	20	190
일 반 용	50	490